

<업무보고 : 법무담당관실>

업 무 보 고

I. 조직과 기능

☐ 기구 및 기능

- 법무담당관실 : 법제 담당 - 법제행정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
- 자치법규의 제정·개폐심사·공포
- 송무1담당 - 소송사무의 총괄
- 행정심판위원회 운영(시)
- 송무2담당 - 소청심사위원회 운영
- 행정심판위원회 운영(군)

☐ 직급별 정원 : 14명

5급이상공무원 : 4명

6급이하일반직 : 9명

기능직 : 1명

II. '98 주요업무 추진상황

1.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

-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입안심사로 자치입법의 적법·타당성 확보
- 자치법규 입안요령 교육 및 최신 입법정보 제공으로 법집행 능력 향상

☐ 추진실적

○ 자치법규 입안심사의 내실화

- 도 자치법규 입안심사 : 125건 (조례 65, 규칙 60)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조례공포안 검토 : 41회 51건
- 시·군 조례·규칙의 공포전 심사 : 3,374건 (조례 2,081, 규칙 1,293)
- 위법·부당한 조례·규칙의 시정 지시 : 32건 (재의 5, 보완 27)

○ 자치입법 실무교육 및 정보제공

- 자치입법 실무자교육 실시 : 1회 185명 (법제처와 공동주관)

- 법무행정 처리 실무교육 실시 : 2회 360명 (도 자체계획)
- 「법무소식」 지 발간 배포 : 매월 3,000부 (도, 시·군, 읍·면·동)
-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: 1회 3,800부

☐ 향후 추진계획

- 자치법규 사전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
- 자치법규 입안능력 제고 및 법무행정실무 교육의 강화
- 위법 부당한 조례제정·개폐에 대한 법적·행정적 조치 확행
- 중앙부처 입법동향 및 타 시·도 입법사례 등의 신속한 전파

2. 조례·규칙 심의회 운영

- 자치법규 및 주요정책의 사전검토로 적법성 및 실효성 제고
- 각 실·국간 협조 및 정보 공유로 정책의 일관성·통합성 강화

☐ 심의회 개요

- 설치근거 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규칙
- 위원구성 : 행정·정무부지사, 실·국장 등 16인
- 개최주기 : 주1회 (매주 화요일 정례화 운영)
- 주요 심의안건
 - 조례·규칙·훈령·예규의 제·개정 및 폐지안
 - 예산·결산안,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의회의 의결·동의·승인관련 안건
 - 각종 도정기본계획 및 당면현안사항

☐ '98 운영실적(10. 31 현재)

- 심의회 개최회수 : 41회
- 안건처리 : 209건
 - 조례공포안 : 51건 · 조 례 안 : 53건
 - 규 칙 안 : 52건 · 훈령 및 일반안건 : 53건

☐ 향후 추진계획

- 자치법규, 도정주요정책 및 당면현안사항의 심의기구로 정착
- 청내 각 부서간 사전 협조 및 행정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
-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회 제공으로 심의 활성화 도모

3.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

- o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공무원 육성으로 자치역량 강화
- o 법규의 해석 및 적용능력 제고로 주민의 권리침해 사전예방

☐ 추진실적

- 법률교육 실시('98. 4. 13 ~ 17, 1주) - 법제처와 공동주관
 - 교육인원 : 185명 (도, 시·군 실무자)
 - 교육내용 : 자치입법, 행정심판 및 소송실무, 지방자치법 해설
- 법무행정처리 실무자 교육 실시('98. 11. 11 ~ 11. 12)
 - 교육인원 : 360명 (시·군·구, 실무자)
 - 교육내용 : 자치법규 입안요령, 행정심판 및 소송실무 처리요령
- 행정절차법 교육 실시('98. 2. 9)
 - 교육인원 : 450명
 - 교육내용 : 행정절차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
- 행정소송 수행자 교육 실시('98. 7. 7)
 - 교육인원 : 100명
 - 교육내용 :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실무
- 행정법규상담실시 : 770건 (면담 240, 전화 530)
-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청문주재 : 45회 310건

☐ 향후 추진계획

- 법령 질의·응답사례집 발간 배포 : 1,100부
- 행정법규 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 공무원상 정립
- 지방자치관계법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지속 실시

4. 주민권리구제 수단으로의 기능 강화

- o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통한 심판의 투명성 확보
- o 신속한 심리를 통한 주민권익 회복과 소송경제 도모

☐ 행정심판위원회 현황

○ 위원회 구성

- 위원장 : 행정부지사
- 위 원 (13) : 공무원 (5), 판사 (1), 변호사 (5), 대학교수 (2)

○ 재결절차

- ① 위원회 의결 · 통보 → ② 도지사 재결 → ③ 당사자에 통지

☐ '98 위원회 운영실적 (10. 31 현재)

(단위 : 건)

개최 회수	접 수			심 판				취하 · 이송	계류중
	계	'97이월	'98	계	인 용	기 각	각 하		
6회	380	83	297	296	32	202	62	27	57

☐ 향후 추진계획

○ 공정한 심판위원회 운영 - 사법절차 준용

- 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제도 운용으로 공정성 확보

○ 신속한 심판진행 - 가급적 법정처리기일 (60일) 내 재결

- 현장확인 등 철저한 사실조사와 객관적인 심리로 심판결과의 신뢰 제고

5. 소청심사를 통한 부당징계 공무원 구제

o 엄정한 소청심사를 통한 지방공무원의 위법 · 부당한 징계 처분 시정

o 경미한 과오공무원 적극 구제,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 확립

☐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현황

○ 설치근거 : 지방공무원법 제14조

○ 구 성 : 7명 (내부위원 3, 외부위원 4)

○ 운 영 : 소청접수 건수를 감안하여 수시 소집 운영

☐ '98소청심사 처리실적

○ 위원회 개최 : 6회

○ 처리건수(10. 31 현재)

(단위 : 건)

접 수	처 리					취 하	계류중
	계	징계취소	징계감경	기 각	각 하		
90	50	3	14	28	5	9	31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엄정한 소청심사로 부당징계처분자 권익보호 및 사기향상

○ 부당징계처분자의 권리구제로 소신있게 일하는 풍토 조성

6.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승소율 제고

- 송무 총괄부서로서의 정확·신속한 소송업무 조정기능 강화
- 고문변호사 활용을 통한 승소율 제고 및 소송경제 도모

□ 추진실적

○ 소송진행현황 (10. 31 현재)

구분	접 수			승 소				패 소				계 류		
	계	행정	민사	계	%	행정	민사	계	%	행정	민사	계	행정	민사
계	122	47	75	49	79	20	29	13	21	2	11	60	25	35
'97	53	18	35	28	69	11	17	13	32	2	11	12	5	7
'98	69	29	40	21	100	9	12	-	-	-	-	48	20	28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소송사무의 정확 신속한 조정으로 실무책임부서의 전문성 동원
- 소제기부터 종결까지의 면밀한 심급별 관리로 승소율 제고
- 패소사례 전파를 통한 동일사례 피소를 사전에 예방

Ⅲ. '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

관리번호	요 구 사 항	조 치 결 과
97 - 12	○ 자치법규집 추록의 신속·정확한 정비를 위한 전문용역업체 활용방안 강구	○ 실·과소 서무담당직원 교육 ('97. 12. 11) ○ 시·군 법제사무처리실태 점검 ('98. 3. 9~'98. 3. 26) ○ 경기넷에 수정분 입력('98. 2월 이후) ※ 2000년 이후 행정자치부의 전산화계획에 의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중지 예정임.
97 - 22	○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 공람공고시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고지방안 검토	○ 도시계획 재정비 등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개별고지 지난 ○ 이해관계인이 소수인 경우는 직접 개별고지중임(완료)